



환경부

환경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'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 협조 요청'

1.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-1733호, '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·접수 계획' 관련입니다.
2. 위 공고의 일정(신청기관 활성화계획(안) 2월초 제출, 3월 평가, 3월말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 및 활성화계획 승인)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과정에서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절차가 누락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
3. 「도시재생법」 제2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 사항이 활성화계획(안)에 포함된 경우, 활성화계획(안)의 승인 전에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(시행령 별표2 비고1).
4. 귀 기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기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 포함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협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평가 및 선정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안내 1부. 끝.

환 경 부 장 관

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(도시재생정책과장), 국토교통부장관(도시재생역량과장), 국토교통부장관(도시재생경제과장), 국토교통부장관(도시재생과장), 국토교통부장관(주거재생과장), 서울특별시(재생정책과장), 부산광역시(도시재생정책과장), 대구광역시(도시재생과장), 인천광역시(재생정책과장), 광주광역시(도시재생정책과장), 대전광역시(도시재생과장), 울산광역시(도시창조과장), 세종특별자치시(도시재생과장), 경기도지사(도시재생과장), 강원도지사(도시재생과장), 충청북도지사(건축문화과장), 충청남도지사(건축도시과장), 전라북도지사(주택건축과장), 전라남도지사(건설도시과장), 경상북도지사(도시계획과장), 경상남도지사(도시계획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도시계획재생과장)

행정사무관 **정우혁** 과장 전결 2019.1.3.
이승환

협조자

시행 국토환경정책과-17

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(어진동)

/http://me.go.kr

전화번호 044-201-7283

팩스번호 044-201-7284

/ korjwh@me.go.kr

/ 대국민 공개